# 한국성서대학교 학사 규정

제정: 1997. 03. 01. 개정: 2019.01.11. 개정: 2019.02.01. 개정: 2019. 02. 15. 개정: 2019. 08. 02. 개정: 2019. 10. 04. 개정: 2019. 11. 08. 개정: 2020. 01. 03. 개정: 2020. 06. 05. 개정: 2020.11.06. 개정: 2021. 08. 06. 개정: 2021. 11. 05. 개정: 2022. 02. 11. 개정: 2022. 05. 06. 개정: 2022. 09. 02. 개정: 2022. 11. 07.

담당: 교학팀(02-950-5406)

#### 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
제4조(수강신청변경)
제8조(결석)
제12조(휴학절차)
제16조(제적)
제20조(편입학취소)
제24조(이수절차)
제28조(이수자격)
제32조(적용범위)
제36조(전과)
제40조(교수방법 협의)
제44조(미 신청과목의 학점처리)
제48조(조기졸업)
제51조의2(백분율)

제2조(수강신청)
제5조(수강신청과목 철회)
제9조(결석인정범위)
제13조(휴학기간)
제17조(재입학)
제21조(학점인정)
제25조(이중전공취소)
제29조(이수절차)
제33조(이수자격)
제37조(교육과정)
제41조(휴ㆍ결강)
제45조(신청과목의 미수강시학점치리)
제49조(학업성적)
제52조(성적보류처리)

제2조의2(교수-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) 제6조(폐강) 제10조(재수강 교과목) 제14조(복학절차) 제18조(편입학 자격) 제22조(적용범위) 제26조(학위수여) 제30조(복수전공취소) 제34조(이수절차) 제38조(수업계획서 작성배부) 제 42조(보강) 제46조(부정행위과목의 학점처리) 제50조(성적평가) 제53조(성적이의신청)

제3조(편입생의 수강신청)
제7조(출석)
제11조(재수강 성적부여)
제15조(자퇴)
제19조(재입학불허)
제23조(이수자격)
제27조(적용범위)
제31조(학위수여)
제35조(이수취소)
제39조(출강확인)
제43조(편입생 학점)
제47조(성적평가방법)
제51조(평점평균)

제54조(추가시험)

제55조(재학 중 군입대) 제56조(성적취소) 제57조(특별처리) 제58조(학사경고) 제59조(유급) 제60조(공고) 제61조(분납) 제62조(납입금 반환) 제64조(휴학자 및 자퇴자의 제63조(납입금 예치) 제65조(학점등록) 제66조(장애학생 학점등록) 납입금) 제67조(정정신청) 제68조(상벌기재) 제69조(증명발급) 제70조(조기졸업) 제71조(졸업) 제73조(계절강좌) 제72조(수료)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15.02.06.)

### 제2장 수강신청

**제2조(수강신청)** ① (개정11.08.05.)(개정15.02.06.)(삭제15.02.06.)

- ② 수강신청은 주·야간 교차신청이 가능하나, 학적은 입학 시의 학적을 유지한다. 수강신청은 수강인원, 강의실 등을 고려하여 제한 할 수 있다.
- ③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중복 수강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로 한다.
- ④ 삭제(개정16.08.05.)
- ⑤ 삭제(03.09.)
- ⑥ 장애를 가진 학생은 우선적으로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.(신설03.01.01.)
- ① 외국인 학생의 수강신청은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다.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(신설06.06.22.)

제2조의2(교수-자녀 간 강의수강 사전신고제) ① 교수 자녀가 입학한 경우 가급적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해당 학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(신설19.02.15.)

- ② 교수 자녀가 불가피하게 부모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수강 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수강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.(신설19.02.15.)
- ③ 사전 신고된 강의는 최종 성적 부여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학과장은 성적 공정 여부를 확인하여 교학처에 보고한다.(신설19.02.15.)
- ④ 수강사실 미신고와 성적산출 근거 미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생의 학점을 F 처리 한다.(신설19.02.15.)

제3조(편입생의 수강신청) ① 일반학생의 수강신청 절차에 의한다.

- ② 전 대학교에서의 동일교과목 및 유사교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각 학과장의 승인을 얻은 이수과목인정서를 제출하여 다른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한다.(개정15.02.06.)
- ③ 본 대학에서 요구 시 전공필수 외에도 특정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수강신청변경) ① 수강신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잘못 기재한 사항(특별히 강좌코드)은 학생이 책임지며 이로 인한 수정은 수강신청변경 기간 외에는 허락하지 않는다.(개정18.12.14.)

②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하는 학생과 과목 폐강으로 인하여 수강신청을 정정할 필요

가 있는 학생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에 수강신청과 수강신청 정정을 할 수 있다.(개정18.12.14.)

**제5조(수강신청과목 철회)** ① 학기 개시 4주 이내에 수강신청과목을 철회할 수 있다. (개정17.04.07.) (개정 18.12.14.)

- ② 수강과목을 철회했을 때는 다른 과목을 대신 신청할 수 없다.(개정17.04.07.)
- ③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된다.

제6조(폐강) 이미 개설한 강좌라도 수강인원이 미달 될 때에는 폐강할 수 있다.

- 1. 교양선택과목: 15명 미만(일부개정15.02.06.)(개정20.01.03.)
- 2. 전공선택과목: 12명 미만(일부개정15.02.06.)(개정20.01.03.)
- 3. 삭제(개정15.02.06.)
- 4. 교과목 및 학과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 폐강하지 아니할 수 있다.(신설 20.01.03.)

### 제3장 출석과 결석

제7조(출석) 매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4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.(개정16.04.08.)

**제8조(결석)** ① 매 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5분의 1을 초과 결석한 자는 해당 과목의 성적을 "F" 처리한다.(개정18.02.09.)

② 3회 지각은 결석 1회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일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9조(결석인정범위) ① 다음에 해당하는 유고결석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은 유고결석으로 처리되어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고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는다. 단, 기말고사 및 계절학기 기간은 인정하지않는다.(개정20.06.05.)(개정22.09.02.)

유고결석 사유		인정기간	증빙서류	
<u>출</u> 산	본인	20일	출산확인서	
	배우자	5일		
 혈족사망	부모·자녀·배우자	5일	사망진단서	
	조부모·형제자매	3일	가족관계증명서	
본인질병	입원	해당기간	입·퇴원확인서	
	격리	(최대2주)	진단서(전염성 및 격리일자 명시)	
병무관계	신체검사		참석확인서(신체검사결과통보서)	
	지원시험	해당기간		
	예비군 및 민방위			
	전역예정자 조기복학	해당기간	전역증	
		(최대2주)	L'70	
학교 공식행사		승인기간	교학처장 승인 서류	
기타 부득이한 사유		승인기간	교학처장 승인 서류	

- ② 본인 질병으로 인한 진료(증빙서류-진료확인서)로 결석계를 제출한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되나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출석점수를 감점하지 않을 수 있다.(개정19.11.08.)(개정22.09.02.)
- ③ 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결석계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출결을 반영한다.(개정19.11.08.)(개정

20.11.06)

- ④ (삭제19.11.08.)
- ⑤ 교육과정에 의한 실습 또는 졸업예정자 조기취업으로 결석하는 경우 최대 4주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및 출석에 상응하는 활동을 수행하여 출석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.(신설22.09.02.)

### 제4장 재수강

**제10조(재수강 교과목)**(삭제20.01.03.)

**제11조(재수강 성적부여)** ① 재수강은 교과목당 1회에 한하며, 취득성적이 D<sup>+</sup>이하만 재수강을 허용한다.(개정20.01.03.)

- ② 재수강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6학점 이내로 하며, 졸업시까지 총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(개정20.01.03.)
- ③ 재수강 과목의 취득 가능한 성적은 B+ 이하이다.(개정20.01.03.)
- ④ 재수강한 과목은 성적증명서에 재수강 과목 'R'(Retake)로 표기한다.(개정20.01.03.)

### **제5장 휴학**(개정13.11.08.)

제12조(휴학절차)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총 수업일수의 5분의 1이상 수강할 수 없을 때는 휴학원에 사유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과장, 도서관, 예비군중대(남자인 경우), 담당자 상담 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미제출자는 제적된다.(개정15.02.06.)

**제13조(휴학기간)** ① 휴학은 재학 중 3회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장애학생 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 교학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.(개정15.05.08.)(개정17.07.07.)(개정20.11.06)

- ② 휴학기간은 한 학기 또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군복무 및 육아(임신, 출산), 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은 유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, 군복무는 병역의무기간에 한하고, 육아와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.(일부개정15.02.06.)
- ③ 삭제(개정15.02.06.)
- ④ 신입(편입)생에게는 해당 첫 학기에 휴학을 허락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입영, 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사유인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면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.(개정15.05.08.)(개정19.10.04.)(개정 21.08.06.)
- ⑤ 휴학연장은 추가 1회 휴학 횟수로 산정하며,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15.05.08.)

### 제6장 복학

**제14조(복학절차)**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해야한다. (개정15.02.06.)

- ② 삭제(개정15.02.06.)
- ③ 복학이 결정된 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입한 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(개정15.02.06.)
- ④ 삭제(개정15.02.06.)
- ⑤ 입대한자가 복학하는 경우 제대 후 1년 이내에 이수 해당 학기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. 제대 후 해당 학기에 복학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.(개정15.02.06.)
- ⑥ 군입대 휴학자 중 학기 개시일로부터 3주 이내에 전역할 수 있는 자로서 복학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.(개정15.02.06.)

### 제7장 퇴학과 제적

제15조(자퇴)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15.02.06.)

**제16조(제적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 다만 제8호와 제9호 해당자 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과 장애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. (일부개정16.03.11.)(개정17.08.11.)

- 1. 매 학기 소정기일 내에 휴학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- 2. 휴학기간이 완료하여도 개강한지 3주 이내 복학하지 아니한 자.(단, 병역의무 복무를 필하고 제대한 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)
- 3. 등록을 필하고 휴학허가 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자.
- 4.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.
- 5. 삭제(개정16.03.11.)
- 6. 사망, 질병, 기타의 사유로 학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.
- 7. 분납한 자가 분납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적한다.
- 8.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(신설16.03.11.)
- 9. 2회 연속 유급한 자(신설16.03.11.)

### 제8장 재입학과 편입학

제17조(재입학) ① 재입학은 재학시 학업성적과 품행 등을 심사하여 허가 할 수 있다. 다만, 징계 등의 사유로 제적처분 받은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
- ② (재입학 허가) 재입학은 전 재적기간을 통하여 원적과 동일학년 이하 1회에 한한다. 단, 특별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회 이상 재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.(개정09.11.20.)
- ③ (절차)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재입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학과장의 면접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개정18.12.14.)

제18조(편입학 자격) ①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1. 편입학 및 일반 재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
- 2. 품행 및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여석이 있을 때도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.

- 3. 편입학은 3학년 1학기와 2학기 개강 전에 적당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.(개정15.02.06.)
- 4. 외교관자녀, 상사주재원, 해외 파견 공무원 자녀 등 재외국민특별전형 대상 학생은 2학년 또는 3학년 편입이 가능하다.(개정15.02.06.)
- 5. 외국대학에서 수학 중 귀국한 자비 유학생들의 일반편입학은 3학년 편입만 가능하다. 편입학 및 재입학은 학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학기를 뛰어서는 허락하지 않으며학기가 중복되는 재입학은 불허한다.(개정15.02.06.)

제19조(재입학불허) 제1학년 학생으로서 제1학기에 제적된 자는 제2학기에 재입학 할 수 없다.

제20조(편입학취소) ① 편입이 허가된 학생으로서 후일 학력 및 자격증명서에서 허위가 나타날 때에는 제적 처분한다.

② 전적 대학에서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편 · 입학 할 수 없다.

**제21조(학점인정)** 편입학생에게 65학점을 인정하며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.(개정15.02.06.)(개정18.11.30.)(개정19.02.01.)

# **제9장 이중전공**(신설18.02.09.)(개정19.01.11.)

제22조(적용범위) ① 모든 학과를 이중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의료인력양성학과는 제외한다.(개정19.01.11.)

② 이중전공자의 수는 학생정원의 100% 이내로 하며,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이중전공자의수를 제한할 수 있다.(개정19.01.11.)

제23조(이수자격) ① 이중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 부터 가능하며 신청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(교양필수, 제1전공 전공필수, 신앙훈련 등)를 이수한 자로 한다.(개정19.01.11.) (개정20.01.03.)

②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총 평점평균이 3.0이상인 자라야 한다.

제24조(이수절차) ① 이중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이중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, 제1 전공 학과장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예비승인을 받아, 이중전공 이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교 학처장의 승인을 받는다.(개정19.01.11.)

② 이중전공 신청자가 승인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순으로 한다.(개정19.01.11.)

제25조(이중전공취소) 이중전공 취소는 4학년 1학기말까지 교학처에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.(개정 19.01.11.)

제26조(학위수여) 이중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2개의 학위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.(개정19.01.11.)

### 제10장 복수전공

**제27조(적용범위)** ① 모든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의료인력양성학과는 제외한다.(개정15.02.06.)(개정18.02.09.)

② 복수전공자의 수는 해당학과 학생정원의 100% 이내로 하며,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수를 제한할 수 있다.(개정15.02.06.)

제28조(이수자격) ① 복수전공 신청은 1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 부터 가능하며 신청학기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과(교양필수, 제1전공 전공필수, 신앙훈련 등)을 이수한 자로 한다.(개정15.02.06.) (개정20.01.03.)

②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, 총 성적 평점평균이 2.7이상인 자라야 한다.(개정 15.05.08.)(개정18.02.09.)

제29조(이수절차)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한 내에 복수전공 희망 학과 학과장, 제1 전공 학과장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후 예비승인을 받아, 복수전공 이수 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.(일부개정15,02,06,)

② 복수전공 신청자가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전 학기의 성적순으로 한다.

제30조(복수전공취소) 복수전공취소는 4학년 1학기말까지 교학처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.

제31조(학위수여) 복수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제2 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.

### **제11장 부전공 및 융합모듈**(신설18.02.09)

제32조(적용범위) ① 모든 학과를 부전공 및 융합모듈을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의료인력양성학과는 제외한다.(개정20.01.03.)

② 부전공자 및 융합모듈 이수자의 수는 해당학과 학생정원의 100% 이내로 하며, 해당학과의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수를 제한할 수 있다.(개정20.01.03.)

제33조(이수자격) 부전공 및 융합모듈은 입학시 부터 이수할 수 있다.(개정20.01.03.)

제34조(이수절차) ① 부전공 및 융합모듈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교학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.(개정20.01.03.)

② 부전공 및 융합모듈을 이수한 자는 졸업증명서에 부전공 및 융합모듈명이 명기된다.(개정20.01.03.)

제35조(이수취소) 부전공 및 융합모듈 이수 취소는 4학년 1학기말까지 교학처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. (개정20.01.03.)

### **제12장 전과**(개정15.02.06.)

**제36조(전과)** ① 전과는 1학년 2학기 수료 예정자 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전 재학 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.(개정15.02.06.)(개정20.01.03.)

- ② (강등전과) 3학년에서 2학년으로 강등하여 전과할 수 있다.(개정15.02.06.)
- ③ (전과허가) 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총 성적 평점 평균이 2.7이상이면 허가 할 수 있다. 전과인원은 학과별 입학정원의 20% 범위 내로 제한하며, 전출·전입학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.(개정15.02.06.)(개정18.02.09.)
- ④ (전과절차)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학과에 정해진 최소한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출·전입학과의 학과장교수와 심층면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전출학과의 승인서와 전입학과의 확인서를 받은 후이를 제출해야 한다. 학과별 전형 방법 및 선발 인원은 학과에서 정하여 매 학기 초 공고한다.(개정 15.02.06.)
- ⑤ (과정이수)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입학과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.(개정15.02.06.)
- ⑥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이 전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외를 둘 수 있다.(신설06.12.04.)(개정15.02.06.)(개정18.02.09.)

### 제13장 교과이수

제37조(교육과정) ① 교육과정은 일립교육(교양교육), 전공교육, 비교과교육으로 구성된다. 이하 일립교육은 교양교육이라 표기 한다.(개정18.02.09.)(개정22.05.06)

- ② 이수구분은 기초공통필수, 교양(필수, 선택), 전공(기초, 필수, 선택), 교직, 일반선택으로 한다.(개정 22.02.11)
- ③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개정18.02.09.)

### 제14장 수업관리

**제38조(수업계획서 작성배부)**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강신청 14일 전에 수업계획서를 작성, 입력하여 야 한다.(개정15.02.06.)(개정16.12.09.)

- ② 수업계획서의 주된 내용은 교수내용, 진도계획, 교수방법, 참고도서, 과제, 평가방법으로 한다.(개정 16.08.05.)
- ③ 수업계획서는 학기 초에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.(개정16.08.05.)
- ④ 수업계획서 내용에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소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(개정03.01.01.)(개정 16.08.05.)

**제39조(출강확인)** ① 강사와 겸임교원은 강의 시작 전에 출강확인표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(개정 18.02.09.)(개정20.11.06)

② 출강확인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교시는 결강한 것으로 처리되며, 보강을 하여야 한다.(개정 18.02.09.)

제40조(교수방법 협의) ① 학과장은 매 학기 말에 다음 학기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강사의 강의내용 및 교수방법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(개정18.12.14.)

② 동일교과를 2명 이상의 교수자가 담당할 경우 수시로 강의진도 상황과 과제 및 시험 등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.(개정20.11.06)

제41조(휴·결강) ① 담당교수가 출장 및 기타 사유로 휴강할 때에는 휴강승인신청서와 보강계획 및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15.02.06.)(개정20.11.06)

- ② 사전 승인 없이 결강하였을 때에는 교학 처장은 즉시 총장 명의로 보강 통지서를 발송하여 일주일이내에 보강토록 조치한다.
- ③ 학과, 학년단위 행사로 인한 휴강 시에는 해당 학과장이 행사계획서와 보강계획 및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개정15.02.06.)(개정20.11.06)

제42조(보강) ① 휴·결강 또는 공휴일, 학교행사 등으로 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제출한 보강계획서에 따라 담당교수는 보강을 하고, 교학처는 계획대로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(개정 20.11.06)

② (삭제20.11.06)

### 제15장 학점

**제43조(편입생 학점)** 삭제(개정18.11.30.)

제44(미 신청과목의 학점처리) 수강신청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.(개정15.02.06.)

제45조(신청과목의 미수강시 학점처리) 수강신청 과목 중 포기한 교과목의 학점은 자동적으로 F학점으로 처리한다.

제46조(부정행위과목의 학점처리) 부정행위 적발 시 그 학기 부정행위 과목 및 당해 학기 경건훈련 과목의 점수를 몰수한다.

제47조(성적평가방법) 성적평가는 각 과목별로 평점 4.3만점으로 하며 출석 및 학습 태도 20%, 중간고 사 성적40%, 기말고사 성적 40%의 비율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출석성적은 최소 10%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.(개정15.02.06.)(개정18.02.09.)

제48조(조기졸업) 조기졸업 대상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청학점에 관계없이 정상적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#### 제16장 시험과 성적

제49조(학업성적) 학업성적은 각 교과별로 시험성적, 과제평가, 출석상황,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(개정18.08.07.)

등급	평점	점수
A+	4.3	97-100
A	4.0	93-96
A-	3.7	90-92
B+	3.3	87-89
В	3.0	83-86
B-	2.7	80-82
C+	2.3	77–79
С	2.0	73-76
C-	1.7	70-72
D+	1.3	67-69
D	1.0	63-66
D-	0.7	60-62
F	0	59이하
I	성적보류(Incomplete)	

**제50조(성적평가)** ① 성적평가는 상대평가로 A: 30% 이하, A+B: 70% 이하, C이하: 30% 이상 범위로 한다. (개정16.08.05.)(개정17.07.07.)(개정19.08.02.)
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
- 1. (삭제14.02.20.)
- 2. 전공필수 실습교과
- 3. (삭제14.02.20.)
- 4. 교양필수에 해당하는 전도훈련 교과목(개정14.02.20.)(개정22.05.06)
- 5. 전공선택·교직의 실습교과(실습기관 또는 현장전문가의 평가점수가 성적평가에 반영되는 경우)(신설 16.08.05.)(개정19.08.02.)
- 6. 계절학기 10명 이하 강좌(신설17.07.07.)
- 7. (삭제)(개정22.05.06)
- ③ PASS과목의 성적평가기준은 총점 70점 이상 시 P, 총점 70점 미만 시 F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세부 성적평가 방법은 수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 (개정17.08.11.)(개정21.11.05)

**제51조(평점평균)**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출 평균치로 하며, 소숫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 처리한다.(개정16.03.11.)

[(교과목별 평점 x 학점)의 총합] : 수강신청 총학점

② Pass 과목의 성적은 P(pass) 및 F(fail)로 처리되며,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(개정16.03.11.)

제51조의2(백분율) 백분율의 산출은 다음과 같은 산출식으로 하며,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한다.

(신설18.08.07.)

[ 40 × (평점평균 - 1) ÷ 3.3 + 60 ]

제52조(성적보류처리) 성적평가가 보류(Incomplete)된 과목에 대하여는 학기 시작 전에 과제물 또는 추가시험에 의하여 처리한다. I가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도 처리되지 않은 경우 자동 F처리된다.

제53조(성적이의신청) ①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담당교수는 정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신설 06.12.04.)(일부개정15.02.06.)

② 이의신청 및 정정기간 이후의 성적정정은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평가누락, 입력 오류 등 담당교수의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첨부된 성적수정요청서를 제출하고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.(신설21.11.05.)

제54조(추가시험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시험 허가원을 담당교수 및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에 제출하고 따로 정하는 기간에 추가시험에 응하여야한다. 추가 시험은 당해 학기 종강 전으로 한다.

- 1. 신병으로 인하여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.
- 2. 병역관계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영장의 원본 또는 사본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야 한다.
- 3.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4.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55조 (재학 중 군입대) 재학 중 군에 입대하는 자로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당 3분지 2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며 입대하기 전에 해당 교과목들을 학기말 시험으로 치루어야 한다. 다만, 불가피한 사정으로 군입대가 보류되었을 때는 즉시 복교하여 계속 수강하여야 한다.

제56조(성적취소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을 취소한다.

- 1. 부정행위에 의한 성적
- 2. 출석미달과목의 성적
- 3. 미등록자가 응시하여 취득한 과목의 성적
- 4.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과목의 성적

제57조(특별처리) ① 장애를 가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시험시간 연장과 도우미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.(신설03.01.01.)

②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하여서는 영어 시험 중 듣기평가를 제외한다.(신설03.01.01.)

### 제17장 학사경고와 유급

제58조(학사경고)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.5에 미달한 자에게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. (개정17.08.11.)

(개정21.11.05.)

**제59조(유급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유급을 시킬 수 있다. 다만 장애학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.(개정16.08.05.)(개정17.08.11.)(개정18.12.14.)

- 1. 평점평균 0으로 당해 학년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(개정18.12.14.)(개정21.11.05.)
- 2. 간호학과 학생으로 당해 학기 전공 교과목을 F등급 받아 학과에서 정한 자(개정18.12.14.)(개정 21.11.05.)
- ② 연속 2회 연속 유급시 제적한다.(개정16.08.05.)
- ③ 학사경고로 인하여 유급조치 된 학생은 당해 학년의 취득학점을 무효로 하며 성적에서 이를 삭제하고 다시 수강하여야 한다.(개정16.08.05.)(개정18.12.14.)
- ④ 교과목 F등급으로 인하여 유급조치 된 학생은 한 학기 휴학 후 유급된 학년, 학기로 복학하여야 하며, 복학 학기에는 F등급 받았던 교과목만 수강신청 가능하고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내일 경우는 제65조(학점등록)에 따라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.(신설18.12.14.)(개정21.11.05)

### 제18장 납입금

제60조(공고) 납입금의 금액 및 납입 기일은 매 학기 초에 공고한다.

제61조(분납)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수업료 납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기에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의 3분의 1이상 3분의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납입기일을 2개월 간 연장할 수 있다.

제62조(납입금 반환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.(개정09.05.12.)

- 1. 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2. 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3.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4. 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 - 5. (삭제09.05.12.)
  - 6. 예치 후 수업시작 전 자퇴할 경우 원금에서 10%를 감한다.
  - 7.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(신설09.05.12.)
  - 8. 과 오납의 경우 과 오납된 금액 전액(개정18.02.09.)
- ②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금액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"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2항의 별표"에 따른다 (신설 09.05.12.)(개정15.02.06.)(개정22.11.04)
- ③ 외국인 관리 규정 제2조(정의)에 따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비자 거절 시, 전액 반환한다.(개정 22.11.04)

제63조(납입금 예치) 재학중인 자가 휴학 시 아래의 납입금반환(예치)기준표에 의해서 예치한다.

① 개강일 전에 수업료를 납입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수업료가 휴학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지 않는다.(개정15.02.06.)

<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 기준>

수업 경과일	반환(예치) 금 액	납입금액
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	수업료의 6분의 5	수업료의 1/6
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	수업료의 3분의 2	수업료의 1/3
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	수업료의 2분의 1	수업료의 1/2
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	반환하기 않음	

제64조(휴학자 및 자퇴자의 납입금) 미등록 재학생이 개강일 이후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, 제63조의 수 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(예치)기준표의 해당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이 납부금은 다음 학기로 이월 되지 않는다.(개정09.05.12.)

제65조(학점등록) ① 학기 등록을 마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학을 계속하는 학점 등록에 따르는 납입금은 다음과 같다.

- 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6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
- 2.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3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
- 3.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의 2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
- 4.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4학년 등록금 전액
- ② 삭제(02.12.)
- ③ 석사학위 이상은 다음과 같다.
- 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
- 2. 4학점 이상은 수업료의 전액
- ④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수료자가 학칙 제44조의 2에 의거 석사과정에서 학점을 취득 하려는 경우
- 위 ③항의 기준을 적용한다.(05.01.12.)

제66조(장애학생 학점등록)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등록 횟수와 상관없이 다음과 같이 학점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.

- 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
- 2.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1과 학생자치회비 전액
- 3.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2분의 1과 학생 자치회비 전액
- 4. 10학점부터 12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3분의 2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
- 5. 13학점부터 15학점까지는 해당학년 등록금의 6분의 5와 학생 자치회비 전액
- 6. 16학점 이상은 해당 학년 등록금 전액과 학생 자치회비 전액

### 제19장 학적부 기재사항

제67조(정정신청) 학적부와 호적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거 사유가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하여 교학처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(개정18.12.14.)

- 1. 이름
- 2. 생년월일
- 3. 삭제(개정18.12.14.)

**제68조(상벌기재)** 상벌은 해당사항 모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성적우수에 있어서는 전체 최우수, 학년 최우수, 학년 우수까지 학적부에 기록한다.

### 제20장 증명서 발급

제69조(증명발급) ① 교학처에서 발급되는 한글, 영문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다.(개정15.02.06.)

- 1. 재학증명서
- 2. 재적증명서
- 3. 수료증명서
- 4. 졸업증명서
- 5. 성적증명서
- 6. 휴학증명서
- 7. 졸업예정증명서(신설16.11.11.)
- 8. 제적증명서(신설16.11.11.)

위 제 증명서는 당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서학교 및 성서신학교 학생의 경우 2일 이내 신청 케 한다. 증명료는 한글 1,000원, 영문 2,000원으로 한다.

### 제21장 졸업 및 수료인정

제70조(조기졸업) ① 수업연한이 차기 전에 각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필수, 기초공통필수, 교양필수 및 선택교과목을 포함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에게는 조기졸업의 자격이 부여된다.(개정 18.11.30.)(개정20.11.06)

- ②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신입생의 경우 6학기 혹은 7학기, 편입생의 경우 3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15.05.08.)(개정20.11.06)
- ③ 삭제(개정20.11.06)
- ④ 삭제(개정15.05.08.)
- ⑤ 졸업의 결정은 학사관리위원회에서 한다.(개정15.02.06.)

제71조(졸업) 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1.5 이상이어야 하며 소정의 교양과목, 기초공통과목,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졸업시험에 통과해야 한다.(개정18.11.30.)

- ②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음 각 호와 같다.(신설18.11.30.)
- 1. 인문사회계열: 130학점
- 2. 공학계열: 130학점

3. 자연계열: 138학점(개정19.02.01.)(개정22.02.11.)

제72조(수료) 각 학년의 수료를 인정하는 학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.(개정18.11.30.)(개정19.02.01.)(개정22.02.11.)

학년	인문사회계열,	공학계열	자연계열
1	33학점 이상	33학점 이상	35학점 이상
2	65학점 이상	65학점 이상	69학점 이상
3	98학점 이상	98학점 이상	104학점 이상
4	130학점 이상	130학점 이상	138학점 이상

### **제22장 계절강좌**(신설18.09.07.)

제73조(계절강좌) ① 계절강좌는 수강신청 인원 10명 이상 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학처장이 승인한 경우 개설인원 미달 시에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강인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개정16.12.09.)(개정18.12.14.)

- ② 수강 신청료는 별도로 납부
- ③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가능
- ④ 계절강좌에서 신청한 학점은 당해 학기 수강신청에는 포함시키지 않으나 졸업학점에는 산입한다.
- ⑤ 대상: 재적생 및 시간제학생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교무위원회 결의일인 1999년 10월 27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2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3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결재일인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교무회의 결의일인 2014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규정) 제11조는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(경과규정) 제12조는 2015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5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규정) 학사규정 제36조는 2015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2014학년도 신입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5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6년 0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6년 08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6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7년 04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7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7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8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규정) 학사규정 제9장, 제28조, 제33조, 제36조는 2018학년도 신입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2017학년 도 신입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8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8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규정) 학사규정 제21조, 제71조, 제72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201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9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규정) 학사규정 제21조, 제71조, 제72조는 2019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201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9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규정) 학사규정 제50조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## 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9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규정) 학사규정 제50조는 2020학년도 신입(편입)학생 기준으로 적용한다.

### 부 칙

- 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19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규정) 학사규정 제9조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0년 01월 03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0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0년 11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1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1년 11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2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2년 05월 06일부터 시행한다.
 (경과규정) 제37조, 제50조는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2년 09월 02일부터 시행한다.

# 부 칙

1. (시행일) 본 개정안은 2022년 11월 04일부터 시행한다.